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0

2025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남창진 의원(찬성자 33명)

나. 제 안 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 정 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및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및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정의에 "북 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하고(안 제2조),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 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며(안 제4조),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7조)하 려는 것임.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 3백여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 (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 6.365명('25.1.31 기준)]

(단위:명)

구 분	'25.1.31	'24.1.1	'23.1.1	'22.1.1	'21.1.1
서울시	6,365	6,432	6,595	6,776	6,970
비율(%)	20.3	20.5	21.0	21.5	22.1
 전 국	31,422	31,315	31,365	31,503	31,521

※ 서울시가 전국의 20.3%로 경기도 35.5%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추세임.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현황]

(2024년, 단위:%)

구 분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계
서울시	11.9	10.3	77.9	100.0
 전 국	5.9	15.9	78.2	100.0

- 출처 : 202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북한이탈 주민 자녀 학습·정서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내용

- ㅇ 전문교사의 1:1 맞춤 방문학습 교육서비스 및 정서멘토링
 - (학습과목) 한글, 국어, 독서, 영어, 수학, 과학 중 1과목 선택
 - (교육진행) 주1회, **회당 60분**(학습 30분, 정서멘토링 20분, 부모상담 10분)
- ㅇ 기초학습능력 등 검사를 통한 학업성취도 측정,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 세부 학습내용>

연번	세 부 내 용	진행시간
1	 < 학습 멘토링 > ● (한글)시각적 이미지 활용한 글자습득(통글자, 한글자, 자음자 등) ● (국어)다양한 문장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향상 ● (독서코칭)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표현력 역량 강화 ● (영어)알파벳, 발음중심문자, 단어, 문법 등 체계적 수업 제공 ● (수학)연산력 완성,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 수학교육 제공 ● (과학)기초과학, 생물 등 종합형 탐구활동을 통한 과학 학습 	매회 30분
2	 < 정서 멘토링 > ■ 심리상담, 감정코칭,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운영 (뇌 지도 그리기, 감정낱말카드, 타인 생각읽기 게임 등) 	매회 20분
3	< 부모양육 상담 > ■ 매회 학습 지도 방법 등 양육 및 교육 정보 제공	매회 10분

- 출처: 행정국 방침서 발췌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 개정(2024.10.22., 시행일 2025.4.23.)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출생지 구분없이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u>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 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u> 노 력하여야 한다.
- ※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하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조례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지원대상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이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세부 내용 검토

-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의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혼
	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u>2</u> . (생 략)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친족'의 사전적 의미가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당초 취지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의 범위를 넘어 지원대상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지원대상 및 범위 조항 정비(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은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명문화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	제4조 <u>(지원 대상 및 범위)</u> ① <u>지원</u>
<u>주민에 대한 지원범위</u> 는 다음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
각 호와 같다.	탈주민 가정으로 하며, 지원 범
	<u>위</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생활고충·법률·취업</u> 등의	2. <u>생활고충・법률</u>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
<u><신 설></u>	<u>4. 의료 및 돌봄 지원</u>
<u><신 설></u>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u><신 설></u>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기	
	<u>선</u>	
<u>4</u> .· <u>5</u> . (생 략)	<u>7</u> .・ <u>8</u>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명문화하고 지원범위를 생활고충, 기초생활물품, 의료, 취업 등 분야별 각 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의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혼인 등으로 <u>친족관계</u>를 이루는 공동체로 정의하여 포괄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을 보면 뉴딜일자리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바, 맞춤형 취업교육과 함께 구인 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매력(뉴딜)일자리사업	18명	5명	3명
취업인원 (취업기관명)	5명 (남북하나재단3, 강원북구하나센터1, 서울시 다시서기센터1)	2명 (여성가족재단, IT민간기관)	-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 결과]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ᆫ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치과진료	치료인원	100명	80명	100명	77명	100명	88명
(틀니, 보철 등)	예산(백만원)	174	167	168	137	294	167
건강검진 등 (일반질환등 포함	검사인원	200명	235명	360명	202명	260명	201명
	예산(백만원)	106	94	158	87	130	79

3) 자구 표현 정비(안 제7조)

○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심의 사항 규정 내용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반영하여 자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제7조(협의회의 기능)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u>가정 지원에 관한 다음</u>
1. <u>북한이탈주민의 취업</u> 및 생	1. 취업
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2. 교육지원
관한 사항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조례의 용어 및 자구 표현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정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 정 안 의 요 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위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추가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규정 및 안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규정에서 '북한이탈 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함.
-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25.4.23.)과 동일하게 수정함.
-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350

제안연월일: 2025년 3월 7일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위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추가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규정 및 안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규정에서 '북한이탈 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함.
-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25.4.23.)과 동일하게 수정함.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 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 4. 의료 및 돌봄 지원
-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행사 개최
-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2.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5. 4. 23. 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승)
<u>음과 같다.</u>	<u>.</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u> <신 설></u>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u><삭 제></u>
	란 제1호에 따른 북한이	
	<u>탈</u> 주민과 혼인·입양·혈	
	연관계 등으로 친족관	
	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	
	거를 함께하는 공동체	
	<u>를 말한다.</u>	
<u>2</u>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u>2. (현행 제2호와 같음)</u>
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	제4조 <u>(지원 대상 및 범위)</u>	제4조 <u>(현행과 같음)</u>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	①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	
<u>위</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주민 및 북한이탈주민</u>	
	<u>가정으로 하며, 지원 범</u>	
	<u>위</u>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	1. (현행과 같음)	1. <u>언어·기초학력 및 사</u>
회적응 교육		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
		<u>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u>
		육지원
2. 생활고충·법률·취업	2. <u>생활고충·법률</u>	 2. (개정안과 같음)
등의 상담 및 지원		
<u>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u>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3. (개정안과 같음)
지원	<u>생활편의 제공</u>	
	I	I I

<u><신 설></u>	<u>4. 의료 및 돌봄 지원</u>	4. (개정안과 같음)
<u> <신 설></u>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5.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6. (개정안과 같음)
	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개선	
<u>4</u> .· <u>5</u> . (생 략)	<u>7</u> .・ <u>8</u> . (현행 제4호 및 제5	7.・8. (개정안과 같음)
	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u>(현</u>
회는 <u>다음</u> 각 호의 어느	북한이탈주민 및	<u>행과 같음)</u>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대하여 심의한다.	<u>에 관한 다음</u>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1. <u>취업</u>	1. (현행과 같음)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		
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2. 교육지원	2.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u>지원</u> 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4.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는 2025. 4. 23. 부

시행한다.

<u>터 시행한다.</u>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어 ·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 2. 생활고충 · 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 4. 의료 및 돌봄 지원
-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행사 개최
-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 여 심의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2.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 4. 23.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의 범위) ① (생략)	제4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 음)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u>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u>
2. <u>생활고충·법률·취업</u> 등의 상담 및 지원	<u>녀의 교육지원</u> 2. <u>생활고충·법률</u>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
<u><신 설></u>	<u>4. 의료 및 돌봄 지원</u>
<u> <신 설></u>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u> <신 설></u>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
	<u>식개선</u>
<u>4</u> .· <u>5</u> . (생 략)	<u>7</u> .⋅ <u>8</u>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생략)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현행과 같
	<u></u> 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u> 에	2.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관한 사항	<u>교육지원</u> 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